

자 체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2년 일자리경제실 자체감사 —

2022. 7.



□ 처분요구일람표

1. 법인카드 및 결제계좌 관리 소홀 (시정) 1
2. 소비자물가 모니터 채용 부적정 (주의) 3
3. 2019년 ○○○○○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대행사업자 선정 부적정 (주의) 5
4. 2019년 ○○○○ □□□□ 위탁사업비 집행 부적정 (주의) 8
5. □□□□ 친선의 밤 및 □□□□ 교류확대 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10
6. 경상북도 □□□□□□ 작성 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12
7. 지방보조사업 계획변경승인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주의) 14
8.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주의) 17
9. 보조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주의) 20
10. □□□□□□ 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주의) 22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법인카드 및 결제계좌 관리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A과
내 용	

A과에서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관련한 결제계좌를 관리하고 있다.

「지방회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부서장은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전결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0.1.1.)」에 따르면 분임재무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을 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지급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홈페이지 검색 등)을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제)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매뉴얼에 따르면 지출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담당자는 반납 결의 요청 후 해당 금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이미 경비로 집행한 법인카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지출 건을 취소한 후 결제대금을 반납하는 등 잘못된 지출을 수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0.9.15. 법인카드 사용액 96,000원을 같은 해 9.18.에 지출한 후, 같은 해 10.13. 취소하여 10.16. 결제계좌로 동일한 금액이 입금되었는데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납 또는 세입조치 없이 결제계좌에 내버려 두고 있다.

[표] 법인카드 결제대금 취소에 따른 반납 조치 미이행 내역

(단위 : 원)

법인카드번호	결제대금	최초사용일	지출일	대금결제일	결제취소일	결제대금환급일
****-****-****-****	96,000	2020.9.15.	2020.9.18.	2020.10.12.	2020.10.13.	2020.10.16.

그 결과 2020년회계연도에 반납되어야 할 예산이 반납조치 되지 않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조치 없이 공공예금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다.

조치할 사항 A과장은

- ① 세입조치되지 않고 공공예금계좌에 남아 있는 96,000원은 세입조치 하시고, (시정)
- ② 앞으로 세출 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반납처리하는 등 세출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소비자물가 모니터 채용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B과
내 용

B과에서는 아래 [표1] 과 같이 지역 물가동향 파악 및 물가안정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소비자물가 모니터를 위촉해 오고 있다.

[표1] 경상북도 소비자물가 모니터 위촉 현황

위촉기간	연도	인원	수당(원) ¹⁾		비고
			1개월	12개월	
2019.1.1.~2020.12.31.(2년)	2019년	33명	267,200	3,206,400	시지역 20명 군지역 13명
	2020년	33명	274,880	3,298,560	
2021.1.1.~2022.12.31.(2년)	2021년	33명	279,040	3,348,480	
	2022년	33명	293,120	3,517,44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따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 물가모니터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르면 모니터는 아래 [표2]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표2] 경상북도 소비자물가 모니터 위촉 요건

1.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자
2.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자
3. 소비자단체 활동 경험이 있거나, 모니터 임무수행에 관심이 있고 모니터 활동이 가능한 자

1) 원천세 포함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소비자물가 모니터 모집요건을 정해진 규정에 위배되게 부당하게 제한하여 특정한 사람이 우대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소비자물가 모니터 모집 계획²⁾을 23개 시군에 통보 하면서 「경상북도 물가모니터 운영규정」에서 정한 위촉 요건에 기존 소비자물가 모니터 중 재위촉을 원하는 자를 우선으로 위촉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3] 과 같이 2019년 소비자물가 모니터는 33명 중 4명을 제외한 29명이 재위촉 되었고, 2021년 소비자물가 모니터는 33명 전원이 재위촉 되었다.

[표3] 경상북도 소비자물가 모니터 위촉 현황

위촉일	위촉기간	총 위촉인원	재위촉	신규위촉
2018. 12. 11.	2019. 1. 1.~2020. 12. 31.(2년)	33명	29명	4명
2020. 12. 28.	2021. 1. 1.~2022. 12. 31.(2년)	33명	33명	-

조치할 사항 B과장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모니터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모집계획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2) 제6기 道 소비자물가 모니터 모집 계획 통보(B과-30157, 2018.11.19.),
제7기 경상북도 소비자물가 모니터 모집 계획 알림(B과-15966, 2020.11.18.)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2019년 ○○○○○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대행사업자 선정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C과
내 용

C과에서는 아래 [표1] 과 같이 BB를 위탁사업자로 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을 추진하였다.

[표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위탁사업자	위탁사업비	사업내용
2019년 ○○○○○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2019.7.1.~ 2019.12.31.	BB	250,000	·키즈디자인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작 시상 및 전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17.9.2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비의 통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한 입찰자의 기술능력을 평가를 할 때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자가 추천한 다빈도 순으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위탁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사업자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할 경우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 후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행사업자를 평가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래 [표2] 와 같이 위탁사업자 BB는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조달청에 입찰대행을 의뢰한 후 정성평가³⁾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5명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의 기술능력을 평가하였다.

[표2] 입찰참가자 기술능력평가 내용

사업명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여부	평가위원회 인원	평가업체 수	대행사업비
2019년 ○○○○○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부	5명	CC(주) 등 4개업체	194,776천원

그 결과 위탁사업 대행사업자 선정이 보조금 교부 조건 및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여 추진되었다.

3)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적평가 항목으로 나누어지며 조달의뢰 계약일 경우 의뢰자가 기술적평가 결과를 통보하여 조달청이 기술적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조치할 사항 C과장은

앞으로 위탁사업자가 「지방보조금 관련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2019년 ○○○○ □□□□ 위탁사업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D과
내 용

D과(구 DD과)에서는 아래 [표1] 과 같이 2019.10.15. BBB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 □□□□ 현장토론회”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추진하였다.

[표1] 전통시장 행복경제 현장토론회 개요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위탁사업자	사업비교부	위탁사업비	사업내용
○○○○ □□□□ 현장토론회	협약체결일 ~ 2020.2.29.	BBB	2019.10.25.	20,000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및 현장토론

위 부서에서 작성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2015.1.1.시행)」 제2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여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30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위탁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통장에서 사업비를 이체하거나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보조금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하는 등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2] 와 같이 위탁사업자가 전통시장 행복경제 현장토론회 보조사업 통장과 연계된 보조사업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보조사업 통장에서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5,189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는데도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다.

[표2] 보조금 집행 부적정 내용

(단위 : 원)

지급일	지급액	지급내용	정당채주	비고
합계	5,189,400			
2019.12.17.	282,400			법인카드로 결제 후 보조금통장에서 결제계좌로 이체
2019.12.20.	2,000,000	현장토론회 기념품 제작	AAA	
2019.12.20.	70,000	현장토론회 필기구 구매	BBB	
2019.12.20.	1,833,000	현장토론회 다과 구입 및 현장토론회 식비	CCC DDD EEE FFF GGG	
2019.12.20.	954,000	현장토론회 책자 및 현수막 제작	HHH	
2019.12.20.	50,000	행복경제토론회 1차 간담회 식비	III	

그 결과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저해되었다.

조치할 사항 D과장은

앞으로 위탁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위탁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친선의 밤 및 □□□□ 교류확대 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E과
내 용

E과에서는 아래 [표] 와 같이 AAA을 위탁사업자로 “□□□□ 4) 친선의 밤 및 □□□□ 교류확대사업”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추진하였다.

[표] □□□□친선의 밤 및 □□□□ 교류확대 사업 개요

(단위 : 천원)

사업기간	위탁사업자	위탁사업비	사업내용
2019.4월~12월	AAA	50,000	·한국-베트남 경제교류협력 및 봉사활동 ·인도네시아협회 해외봉사활동 ·대구경북 국제교류협의회 친선의 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18.9.27.)」에 따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19.5.28.)」에 따르면 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⁵⁾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⁶⁾으로 명시하고 있다.

4) BBB

5)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타공공기관(국립대학병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정부 출연기관 등)

6)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써,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또한 같은 기준에 따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정산은 민간 경상보조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을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 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사업을 재위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은 공기관이 수행하도록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수행자가 제3자에게 사업을 재위탁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9.4.15. “□□□□ 친선의 밤 및 □□□□ 교류확대사업”을 BBB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4.18. AAA이 BBB와 협약하여 사업의 전부를 재위탁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위탁사업비 50,000천원을 AAA에 교부하였다.

그 결과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이 공기관이 아닌 자에게 전부 재위탁되어 수행되었고, AAA는 사업 수행 없이 대행수수료 2,000천원⁷⁾의 수익을 얻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E과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7) □□□□ 친선의 밤 및 □□□□ 교류확대사업 사업예산 내역

세목	세부내역	금액	비고
	합계	50,000	
사업비	한국-베트남 경제교류협력 및 봉사	12,000	
	인도네시아협회 해외봉사활동 계획	15,000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친선의 밤	21,000	
	대행수수료(사업비의 5%)	2,000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경상북도 □□□□□□ 작성 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F과
내 용

F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AAA을 위탁사업자로 경상북도 □□□□□□ 작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표] 경상북도 □□□□□□ 작성 위탁사업 개요

(단위 : 천원)

사업연도	사업기간	위탁기관	위탁사업비	협약체결 요청일	사업비 교부결정 및 교부일
2020년	2020.1.~ 2020.12.	AAA	20,000	2020.3.12.	2020.3.29.
2021년	2021.1.~ 2021.12.		15,000	2021.3.4.	2021.3.22.
2022년	2022.1.~ 2022.12.		15,000	2021.1.27.	2022.2.14.

위 부서와 AAA이 체결한 연도별 협약서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매월 경상북도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사업의 사업비⁸⁾는 연구원 인건비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여비 및 인쇄비로 구성되어 있다.

8) 사업비 구성 비율

사업연도	합계	인건비	경비
2020년	100%	83.9%	16.1%
2021년	100%	83.5%	16.5%
2022년	100%	73.6%	26.4%

또한 위 사업 업무협약서 제4조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위 사업이 매년 1월부터 경상북도의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는 사업이고, 사업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시작 전에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비를 교부하여 위탁사업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위탁사업자와의 협약을 사업개시 이후에 체결하고 사업비를 사업시작 이후에 교부하였다.

그 결과 위탁사업자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 자체 예산을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F과장은

앞으로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등을 사업 일정에 맞게 추진하여 위탁사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방보조사업 계획변경승인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G과
내 용

G과에서는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노사협력 사업 보조금을 BBB에 지원하였다.

【표1】 2019년 □□□□□□ 노사협력 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조사업비			사업내용
			계	도비	자부담	
□□□□□□ 노사협력 사업	BBB	2019.9.1.~10.31.	41,829	30,000	9,810	2019년 노동정책방향 및 현안 관련 특강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강사료, 원고료, 출장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시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항공운임 집행 시 증빙서류는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항공사 발행 전자항공권 등)로 항공사 또는 여행사 등을 통해 대행 구매한 항공권인 경우에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및 기간의 변경을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한 경우 승인절차를 거쳐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후 변경된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야 하고, 항공운임을 집행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여비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항공사 또는 여행사 등을 통해 대행 구매한 경우 항공운임을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직접 지급하고 증빙서류로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항공사 발행 전자항공권 등)을 제출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BBB가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신청 검토 및 승인여부 통보를 미이행 하였고, 위 협회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보받지 않았음에도 아래 [표3]과 같이 사업기간 종료 후 제주워크숍(2차)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위 부서에서는 위 협회가 제주워크숍 1차, 2차 항공운임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면서도 별도의 조치를 명하지 않고 보조금액을 확정된 사실이 있다.

【표2】 2019년 □□□□□□ 노사협력 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 내역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변경 신청 제목	변경내용		변경신청 검토/승인통보 여부
		변경 전	변경 후	
BBB	□□□□□□ 워크숍(2차) 사업계획 변경의 건	사업기간 : 10.16.~10.18. 사업장소 : 전남일원 참석인원 : 35명 소요예산 : 11,200,000원	사업기간 : 12.9.~12.11. 사업장소 : 제주일원 참석인원 : 20명 소요예산 : 11,200,000원	부

※ G과 제출자료 재구성

【표3】 2019년 □□□□□□ 노사협력 사업 출장 여비 정산 부적정 현황

보조사업자	워크숍명	워크숍기간	워크숍장소	인원(명)	항공운임 증빙유무
BBB	제주워크숍(1차)	2019.9.26.~9.28.	제주도	50	무
	제주워크숍(2차)	2019.12.9.~12.11.	제주도	20	무

※ G과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G과장은

앞으로 지방보조금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 승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통보하시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금 정산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H과
내 용

H과에서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1] 2019년 □□□□□□ 해외마케팅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교부결정일	보조사업비			주요내용
		계	도비	자부담	
2019년 □□□□□□ 해외 마케팅사업	2019.9.18.	299,956	105,000	194,956	*** 제조기술 전시회 참관 등

1.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으로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할 수 있고,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에 따르면 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은 입찰공고 전에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을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 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을 할 경우 입찰에 부치고, 입찰공고 전에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을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 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BBB가 아래 [표2]와 같이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는데도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명령을 하지 않는 등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수행상황 점검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2] BBB 부적정 용역계약 현황

보조사업명	여행상품명	여행기간	계약금 (천원)	계약상대자 (여행업자)	계약방법
2019년□□□□□□□□ 해외마케팅사업	경상북도 BBB 미동/캐동 9일 해외연수	2019.10.1.~ 2019.10.9.	299,956	CCC	수의계약

※ H과 제출자료 재구성

2. 지방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강사료·원고료·출장여비 등은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자

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은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국외 숙박비의 증거서류는 숙박비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국외 숙박비 집행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여비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숙박비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BBB가 아래 [표3]과 같이 숙박비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의 증거서류를 갖추지 않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시정 조치를 명하지 않고 보조금액을 확정 한 사실이 있다.

[표3] 2019 □□□□□□ 해외마케팅사업 숙박 미증빙 내역

지출결의일	비목	내역	지급처	지출금액 (천원)	지급일	숙박증거 서류유무
2019.9.23.	숙박료	7일X89명X97,513원	DDD	60,750	2019.9.23.	무

※ H과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H과장은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가 집행·정산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보조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J과
내 용

J과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경상북도 □□□□□□ 주간행사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1] 2021년 경상북도 □□□□□□ 주간행사 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조사업비			사업내용
			계	도비	지부담	
경상북도 □□□□□□ □□ 주간행사	AAA	2021. 1월 ~ 12월	20,000	20,000	-	소비자의 날 기념식,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릴레이홍보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 및 제13조에 따르면 장사료·원고료·출장여비 등은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자치단체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하여야 하고, 국내여행자 및 국외여행자는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내 자동차운임은 실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출장 여비 등을 지출할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에 따라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자동차운임을 실비로 지출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AAA가 아래 [표2]와 같이 국내 자동차운임을 실비로 지급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지급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별도의 조치를 명하지 않고 보조금액을 확정된 사실이 있다.

[표2] 경상북도 □□□□□□ 주간행사 여비 지급 부적정 현황

- 내용 생략 -

조치할 사항 J과장은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정산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K과
내 용

K과에서는 대양주의 동포사회를 조명하고 대양주 해외동포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 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1] 2019년 □□□□□□ 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보조사업자	사업비			주요 내용
		계	도비	자부담	
2019	BBB	109,000	104,000	5,000	- 대양주 해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 경북인 이민사 콘텐츠 발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 부서에서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2019.3.3.)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카드를 이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BBB)가 아래 【표2】와 같이 여행사(DDD)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 시 보조금 전용카드나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집행 업무 미숙 등의 사유로 연구소 직원 카드로 항공료(2,674천원)을 지불한 후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직원 본인 계좌로 해당 비용을 이체하였는데도 보조금을 정산확정 하였다.

【표2】 개인계좌로 집행한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금액	집행내용	여행사
BBB	2,674	인천-시드니 항공권 (2인)	DDD

조치할 사항 K과장은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정산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